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시행령

<목 차>

1. 과태료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성 자	이름	최인성
	담당부서 (과)	지방교육재정과		직급	사무관
	국장	강영순		연락처	044-203-6529
	과장	천범산		이메일	ischoi@moe.go.kr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과태료 신설		
	2.규제조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3.위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6.12. ~ ’17.7.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17.3.21.)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고자 개정		
	7.규제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명시하는 사항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개발사업시행자		
	9.기대효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의 실효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과태료 부과기준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함		
	12.일몰설정 여부	○		
기타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분양자료를 이 영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분양자료를 이 영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17.3.21)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고자 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시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3. 기대 효과

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진행의 어려움 해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과태료 부과기준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일몰설정 여부

5년 설정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해당 없음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이행 가능성을 제고함

○ 규제 차등화 방안

분양자료 기한내 미제출, 기한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미제출 및 거짓 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차등 적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일반 개인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자료 제출 지연 시에 부과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현행 행정인력으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현행 운영비 범위안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관계기관 의견수렴(시·도교육청, 2017.4.28)
- 관계기관 협의(행정자치부, 2017.5.17)
- 개정령안 기본계획 수립(2017.5.23)

2. 향후 평가계획

-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전출률 제고 여부 점검

3. 종합결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신설에 따른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어려움 해소 기대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